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68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 과태료 1억 5,750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(허위·가공의 보험계약 모집)

◦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- ㈜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△△△ 등 2명은 2021.7.29.~2023.9.22.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양○○ 등 78명의 명의로 동양생명보험㈜의 ‘(무)수호천사내가만

드는보장보험’ 등 186건의 보험계약(초회보험료 54백만원, 수수료 540백만원)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보험업법」 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제1항 제6호

○ 「보험업법」 제209조(과태료) 제7항 제7호